

주세법

[시행 2023. 4. 1.] [법률 제19201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

제정·개정문

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'소비자물가상승률'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,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,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,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'가격변동지수'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제정·개정이유

전체 제정·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2년 12월 31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

● 법률 제19201호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

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탁주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(100원 미만은 버린다)

세율 =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× [1 + 가격변동지수(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, 출고가격의 변동,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)]

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"본문 또는 제2항"을 "본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이나 제2항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맥주: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(100원 미만은 버린다).

제26조제1호 중 "제8조제1항·제2항"을 "제8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·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주세법」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